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쉐어필라테스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41713	https://sharepilates.modoo.at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4-12-1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2-19	

[쉐어필라테스]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 (주)쉐어필라테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쉐어필라테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 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17, 205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TEL : 0507-1348-796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팀 / 0507-1348-7966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 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쉐어필라테스	쉐어필라테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17, 205호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2024.05.30	2024.07.01	한상준	0507-1348-7966	-
	법인등록번호	110111-8960810	사업자 등록번호	394-81-03406	

※ (주)쉐어필라테스는 한상준 대표이사가 2020년 2월 1일부터 운영한 쉐어필라테스를 법인 전환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한상준	쉐어필라테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17, 205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한상준	0507-1348-7966	-
감사	주혜진	쉐어필라테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17, 205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한상준	0507-1348-7966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쉐어필라테스	/

상 호	[쉐어필라테스] ()점	/
상 표(서비스표) 1	쉐어필라테스	출원 4020220187581 (2022.10.14)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 없음"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해당없음"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해당없음"					

※ (주)쉐어필라테스는 2024년 5월 30일 설립하여 직전 3개년간 매출실적이 없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쉐어필라테스	2021년	"해당없음"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해당없음"		

※ (주)쉐어필라테스는 2024년 5월 30일 설립하여 직전 3개년간 매출실적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성 명	현 직 위	사 업 경 력		
			사업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한상준	대표이사	2020.02.01.~	웨어필라테스 마포점 대표	경영총괄
			2024.05.30.~	(주)웨어필라테스 대표이사	
관련	주혜민	감사	2024.05.30.~	(주)웨어필라테스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		직원수
	상근	비상근	
2023년도말 기준	"해당없음"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한 바 없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신청여부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사용허용기 간)
웨어필라테스 (상표권)	당사에서 부여한 상표 사용권	2022.10.14	4020220187581	한상준	2034.06.03
		2024.06.03	4022034920000		

⇒ 당사는 상표권의 소유자인 한상준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표 등록에 관한 서류를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귀하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이외의 범위에서 당사의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는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pris.or.kr>)

Ⅱ.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현재 당사는 가맹사업준비중입니다.

2.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쉐어필라테스	쉐어필라테스	한상준	가맹사업 준비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17, 205호

3. 업종

영업표지	업종	
쉐어필라테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서비스	필라테스 무인 대관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1	-	1	1	-	1	1	-	1
서울	1	-	1	1	-	1	1	-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6. 당사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기타 가맹사업 현황

당사 (주)쉐어필라테스는 [쉐어필라테스]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지역	2023 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쉐어필라테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해당없음"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해당 없음"				
광고						
판촉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IBK 기업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1566-2566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계좌번호를 은행으로부터	①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신청서 작성 → ② 가맹본부가 가맹금예치 신청서 은행에 팩스로 발송 → ③ 은행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좌번호	

부여받는 경우	를 휴대폰으로 안내 → ④ 전송받은 계좌번호로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예치	
매장 방문 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 신청서 교부 → ② 은행(e-비즈니스 사업단) 방문 → ③ 가맹금예치 신청서 제출 및 가상 계좌 교부 → ④ 가상 계좌에 가맹금 예치	
인터넷뱅킹 이용 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 신청서 교부 → ② 은행(e-비즈니스 사업단) 방문 → ③ 가맹금예치 신청서 제출 및 가상 계좌 교부 ④ 인터넷뱅킹 접속 → ⑤ 가상 계좌에 가맹금 이체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를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원하여 당사가 (주)서울보증보험의 가맹점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위의 가맹금 예치와 관련한 내용은 귀하에게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 조치 등을 받은 바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쉐어필라테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 급 대 상	예치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총계	7,700				
가맹비	5,500	계약체결 후 즉시	가맹점 오픈 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가맹비는 소멸성임
교육비	2,200	-	-	-	가맹점주 1인 기준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가맹비는 당사의 오랜 기간의 서비스 개발 노하우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대한 대가로 소멸성 금액입니다.

※ 교육비는 당사의 [쉐어필라테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해당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500	계약체결 후 즉시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 배상액을 반환	미납채무 및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가맹계약상의 미이행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3)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천원/부가세포함)
합 계	10,200
가맹비	2,2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 보증금	2,5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49.5㎡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내부인테리어	미정	33,000	2,200	- 계약금(50%) :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시 - 중도금(40%) :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 잔금(10%) : 공사 완료 후 3일내	공사 전 계약 취소	3.3㎡당 금액 산정 불가
외부인테리어	미정	3,850				
필라테스 기구	미정	11,000		- 계약 시 100%	납품 전 계약취소	"
초도물품	미정	5,500				"
합계		53,350	-			

- 위 표의 금액은 기준 면적 49.5㎡(15평)으로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점포의 여건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귀하가 기타 옵션을 추가로 적용하실 경우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당사의 협력업체 외에 자체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할 시 **[웨어필라테스]**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하여 디자인 제공 및 감리의 대가로 점포 면적 3.3㎡당 금 삼십삼만원 (₩330,000)<부가세 포함> 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별도공사 표시 :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복도, 외부 공사, 냉난방, 전기증설, 가스 증설, 화장실, 테라스, 조형물, 외부 닥트 등

(5)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가맹점 입지 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 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고,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추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채용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20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당사는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에 대한 분할납부 등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 분	지급 대상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 가 사 유	비 고
로열티	가맹본부	년 396만원 (부가세 포함)	매년 계약일자	해지	선불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수시교육 : 사전협의 *특별교육 : 사전협의	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재교육 및 신상품 교육 필수
판촉 분담비	가맹본부	사전약정 또는 동의에 따름	통지 후 1주 이내	판촉 활동 미실시	판촉 활동 실시	70%이상 동의시 실시
광고 분담비	가맹본부	사전약정 또는 동의에 따름	"	광고 활동 미실시	광고 활동 실시	50%이상 동의시 실시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분담	좌동	간판 미설치	간판 설치 후	본부 귀책에 따른 변경 시 본사 전액 부담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정보공개서 VII-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동	변경 후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 의 다음날부 터 지급하 는 날까지	-	-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
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연도 평균 규모는 당사의 경우 산정이
불가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산정 불가"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매장 관리	매장의 청소상태 및 정리 상태 관리	분기 1회	
서비스 관리	당사 취급 서비스 품질 관리	분기 1회	
필라테스 기구 및 시설물의 관리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기기의 상태 관리	분기 1회	
회계 관리	매출 확인을 위한 회계조사	1년 1회	
기타 관리	가맹점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 점검	비정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상품, 서비스 관리 등을 포함한 가맹점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가맹계약서 제33조의 1 [가맹본부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 관계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남은 가맹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 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서비스표 등의 지식 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귀하는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부담이 발생합니다.

1) 잔여 계약기간의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천원)	비고
교육비	2,2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 보증금	2,500	부가세 미해당

* 양도인에게 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은 정산을 통해 양도인에 지급하게 됩니다.

2) 신규계약을 통해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천원)	비고
가맹비	5,5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0	"
계약이행 보증금	2,500	부가세 미해당

* 신규 계약의 경우 양수인은 가맹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도인에게 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은 정산을 통해 양도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기간 만료, 갱신의 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33조)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간판, 휘장, 로고 등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지하고, 원칙적으로 귀하의 비용으로 7일 이내에 귀하의 점포에서 위의 영업표지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 2) 위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귀하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 가맹점을 변형하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4) 당사와 협력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기기 등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으며 지원받은 품목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원받은 품목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 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시스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상호 협의하여 반환 품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6) 계약기간 동안이나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의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는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당사의 소유로서 이를 삭제하거나 유출하지 않고 당사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개점 이후에도 추가 품목 구입 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거래상대방)
		상한	하한	
1	"산정 불가"	-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바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거나 또는 권장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품목명	거래상대방	경제적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품목명	거래상대방	경제적이익의 내용
"해당 없음"		

3. 상품·용역, 거래 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및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별첨" 참조	당사의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명성의 유지를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품목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 시 - 서면 통보 후 시정요구 2회 위반 시 - 1주일 전 서면 통보 후 시정요구 통보 후 물품 및 공급 중단 3회 위반 시 - 계약 해지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므로 본 정보공개서에 표시하는 품목 외에도 추가로 판매 품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제품	지정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시 - 서면 통보 후 시정 요구
다른 가맹점사업자			2회 위반 시 - 1주일 전 서면 통보 후 물품 공급 중단과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시 - 계약 해지

※ 본 사항은 가맹계약서상 명시된 사항으로서 당사의 상표권 보호와 가맹사업 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 품 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별첨" 참조	"별첨" 참조	서면 또는 이메일 공지	2024년 5월 기준

다만, 귀하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필라테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가맹본부	계열회사
	웨어필라테스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상 洞 단위 기준	계약서상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 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이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해서 기존 영업지역을 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	-	-	-

※ 가맹사업 준비중입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사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7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상품 등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지체한 경우 또는 정기 납입 경비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32조
정기 납입 경비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POS 매출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	
관리, 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점포의 소재지·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 승인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거나 브랜드와 관련없는 광고물 등을 통해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가맹본부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전 승인없이 요구 품목을 자점 매입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사전 협의 없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전 승인 없이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사업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교육의 참석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기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주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 집행 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 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2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제41조
◆ 회사의 경영방침의 변경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 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 환매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 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 운영권이 인정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의사에 따라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신규 계약 시 가맹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 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 행사, 위탁 등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

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 요청→승인 여부 통지→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 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 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당사 담당팀 검토→승인 여부 통지→대리행사 실시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당사 담당팀 검토→승인 여부 통지→업무 위탁 실시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1) 경업금지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쉐어필라테스]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 비밀이 침해되는 동일 사업을 경영하거나 투자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필라테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 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일 24시간 근무	연중무휴	휴무일 및 영업시간 조정 시 사전 협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거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당사가 영위하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당사의 점포는 무인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권장 종업원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
운영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수시	당사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사용 상태점검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
필라테스 기구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기구 사용 상태점검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
서비스	담당자 또는 위탁업체직원 매장 방문 →接客 서비스 상태점검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 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 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비용은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브랜드 광고	사전약정 또는 동의를 따름	사전약정 또는 동의를 따름	광고 계획 공고 → 사전동의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전체 가맹점주 50% 이상 동의시 진행
	서비스/상품광고				
	가맹점 모집 광고	100%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지역 광고	가맹점 매출 증진	사전약정 또는 동의를 따름	사전약정 또는 동의를 따름	광고 계획 공고 → 사전동의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전체 가맹점주 50% 이상 동의시 진행
개별 광고	가맹점 매출 증진	없음	100%	해당 없음	사전 협의
판촉행사	할인행사	사전약정 또는 동의를 따름	사전약정 또는 동의를 따름	판촉행사 계획 공고 → 사전동의 → 가맹 점 부담액 제시(명 세서)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증정 행사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팸플릿 등 제작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기타 개별행사	없음	100%	행사의 성격에 따름	

- * 당사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광고 및 판촉 행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광고 및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을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의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의 명칭 및 실시기간, 광고의 소요비용에 대한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 동의 또는 약정한 바에 따라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합니다. 가맹사업자 간의 개별 부담액은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 당사가 상기의 부담금액을 통지한 시점 이후 1주일내에 가맹점 사업자는 당사에 해당 부담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에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

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발행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10.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유통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 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 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의 비밀유지 의무(18조)를 위반할 경우 당사의 실 손해액 기준으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고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업금지 의무(19조)를 위반할 경우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2조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하거나 당사와 협의 없이 점포를 양도한 경우는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귀하가 가맹계약서의 자점 매입에 관한 조항 제24조 제1항 1호 내지 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 매입을 한 경우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귀하가 제3자에게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5조의 영업지역 내에서 2년간 귀하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쉐어필라테스]와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 아니되며 2년간 [쉐어필라테스]와 같은 업종의 가맹본부를 설립할 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2조의 절차에 의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직전 3개월간의 평균 로열티에 잔여 계약기간(월)을 곱한 금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귀하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계된 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계약 종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1일당 금삼십만원(₩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귀하가 영업개시 전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비 및 교육비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할인 또는 면제하였거나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 당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중 계약해지를 하거나 귀하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하는 할인 또는 면제한 금전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지원받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9) 본 계약으로 인하여 물품 대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지연이자는 연 20%로 합니다.
- (10) 그 밖에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1) 당사 또는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 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	[14P~18P 참조]
1차 상담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정보공개 사항 검토/상담 -인근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황문서 제 공	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 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 체결 14 일 전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1일	
점포 계약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평수 계 산(소수점 첫째자리)	3일	
도면 작성	-인테리어/별도/추가공사 도면협의	2~3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20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	3일	
교육	-교육 -점주교육	14일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길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 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담비율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사유	가맹본부 비용항목	가맹본부 비용비율	지급 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설비, 장비, 등 인의 노후화가 노관적으로 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을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작비용(장비, 집기, 조명, 등)을 제외한 실내용의 비용(단, 가맹점사업자의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공사계약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공사계약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 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된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서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할 시 특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판촉 및 신규 고객 유치, 고트렌드 관리, 고객 관리, 운영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 계획서 (경영 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 지도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 개선방안을 서면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판촉 및 신규 고객 유치, 고트렌드 관리, 고객 관리, 운영	가맹점사업자 경영 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 계획서 (경영 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 지도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 통상비용을 초과한 부분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 종류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제공 서비스 교육 점포관리 교육 등	이론/실습	계약 후 개점 전까지	의무 교육
수시 교육	신상품 및 서비스 교육 등 본사방침에 따름	집단 또는 개별 교육	별도 통지	의무 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요청 사항	개별교육	요청시 협의	선택 교육
재교육	본사의 영업방침에 따른 상품, 서비스 향상 교육	개별 또는 집체 교육	별도 통지	의무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 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개점전 교육)	8시간 3일간 (총 24시간)	2,200 (점주 1인, 추가인원 별도 협의)	최초 계약시 의무 교육
수시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상이	사전 협의	의무 교육
특별교육	"	"	선택 교육
재교육	"	"	의무 교육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최소 1인 이상)입니다. 당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타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 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경쟁력은 상품 및 서비스의 우수성에 있습니다. 개점 후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당사의 기준미달 시 실시하는 [재교육]은 필수교육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웨어필라테스 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17, 205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년 10개월	1개점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부가세 제외, 단위: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1. [3년간 재무제표]

“해당없음”

별첨2. [판매상품 및 가격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필라테스 기구 및 초도물품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4. [가맹금예치신청서]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5.[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가맹본부 회사명		영업표지 (브랜드)	
제공확인	작성 예시 :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란)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위의 표의 빈칸 모두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3)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4) 가맹사업자의 부담
-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 가맹점 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별첨6.[인근 가맹점 현황표 제공 확인서]

인근 가맹점 현황표 제공 확인서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_____] 대표 _____(인)

가맹희망자 :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